

# 공 고

## ●울산전파관리소 공고 제2026-1호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(전파사용료 체납)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1. 5.

울산전파관리소장

## 전파법령위반 무선국(전파사용료 체납) 행정처분 통지 내역

- 근거법령: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
- 법령위반사항: 전파사용료 체납
- 처분내역: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신고폐지
- 처분일자: 2025. 12. 30. (화)
- 송달대상 및 내역

순번	허가번호	호출명칭	시설자명	예정처분	시설자 주소
1	94-2013-27-0002045	01*구500호	01*구	신고폐지	(44520)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
2	94-2013-27-0002046	01*구501호	01*구	신고폐지	(44520)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
3	94-2023-27-0000109	김*례500	김*례	신고폐지	(44453)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12길
4	94-2023-27-0000110	김*례501	김*례	신고폐지	(44453)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12길
5	94-2023-27-0000111	김*례502	김*례	신고폐지	(44453)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12길
6	94-2023-27-0002169	정해산업500	정해산업	신고폐지	(44211) 울산광역시 북구 버덩길
7	94-2023-27-0002170	정해산업501	정해산업	신고폐지	(44211) 울산광역시 북구 버덩길
8	94-2023-27-0002171	정해산업502	정해산업	신고폐지	(44211) 울산광역시 북구 버덩길
9	94-2023-27-0002172	정해산업503	정해산업	신고폐지	(44211) 울산광역시 북구 버덩길

### 6. 참고사항

- 허가취소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신고폐지된 무선국의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